#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6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용우·권향엽·한정애

민병덕 · 김남근 · 김한규

백혜련 · 강유정 · 백승아

모경종 • 박주민 • 박민규

박홍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 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

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신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로한다.

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지원협의체) ① 지원협의체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u>.</u>
<u>한강수계관리</u>
위원회의 심의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

개

정

아

-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3(지원협의체) ① 지원 협의체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 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 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 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내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

   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